

## 선정당사자변경서

사 건 2000가합000 건물철거등

원 고 (선정당사자) ◎◎◎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선정자들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당사자 ◎◎◎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하고, 아래의 사람을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합니다.

## 아 래

원고(선정당사자) ●●●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000. 0. 0.

선정자(원고) 1. ◎◎◎ (서명 또는 날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2. ●●● (서명 또는 날인)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3.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4.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 ○○지방법원 제○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소송이 제기된 법원(수소법원)				www.klac.or
제출부수	선정당사자변경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58조	제53조	제1항,
기 타	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생(민사소송법 제63조 제		,	지해야만	효력발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